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9. 1.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1.

제 출 자: 고성군수

1. 폐지이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현 정부 및 민선 8기 고성군의 대북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의 대북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폐지를 통하여 현재 가입 중인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절차를 진행하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또한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 조치(201,607천원)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245호

가) 예고기간: 2023. 7. 25. ~ 2023. 8.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 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예상액 201,607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폐지조례안에 따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로 예상되는 세입액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낙창

□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20.10.12 조례 제2579호

(일부개정) 2021.07.05 조례 제26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고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과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군 지원 사업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주사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7.05. 조265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10.12. 조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5. 조2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